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년생식물의 범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은 제외한다.

제3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어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와 태양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그 부대설비로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태양광 모듈, 지지구조물, 기초구조물 및 모듈의 고정·추적 장치
2. 인버터, 접속함, 전력변환장치, 계측·제어·감시장치, 보호·차단 장치, 변압설비 및 배선설비
3. 발전전력을 송전 또는 배전하기 위한 구내 전기설비 및 계통연계 설비
4.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방재,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
5. 발전설비와 일체로 설치되는 농기계 통행, 배수, 관수, 토양보전 및 농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농업생산활동의 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농기계의 진입·회전·작업, 일조·통풍·배수, 농작업자의 안전 및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로 보지 않는다.

1. 농업생산활동과 독립하여 농지 지상에 설치되는 일반 지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2. 지표면을 태양광 모듈·건축물 또는 불투수성 구조물 등으로 덮어 농업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설비
3. 농작물의 정상적인 생육, 농기계 운행, 농업용수의 공급·배수 또는 농작업자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설비
4. 발전사업 종료 또는 허가취소 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농지를 원상

회복하기 곤란한 기초·지지구조를 갖춘 설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차광률, 농기계 통행공간, 배수·관수시설, 안전시설 및 원상회복이 가능한 기초·지지구조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등

제4조(농업인의 거주기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자료로 증명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확인서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그 밖에 농지대장,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 농자재 구입 증명서, 영농일지 등 실제 농업경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와 농업경영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조회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제5조(청년농어업인의 거주기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법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3년간의 농업경영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허가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읍·면·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2.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청년농어업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주소 및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자료로서 허가신청일 현재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6조(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거주기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허가신청일 전 계속하여 1년 및 조합원 수 산정일 전 계속하여 1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조합원 수 산정일”이란 허가신청일, 변경허가 신청일, 발전사업기간 연장신청일,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확인일 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날을 말한다.

③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사업기간 동안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 제1항의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 10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10명 미만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0명 이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④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정관 또는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목적, 사업구역 및 발전사업부지에서의 영농관리체계
2. 지역주민 조합원의 가입·탈퇴, 출자, 의결권 및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발전사업 회계와 주민환원사업 회계의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5.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민원처리, 원상회복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명부, 주소지 변동, 출자 및 의결권 현황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7조(농업법인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정관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사업에 농업경영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3. 발전사업부지에서 소속 조합원·사원·임직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장비·재배기술 및 영농계획을 갖출 것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 목적,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농촌특화지구계획,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5. 발전사업 회계와 농업생산활동·주민환원 관련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6. 농업회사법인은 발전사업부지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된 매립지등은 제외한다)

제8조(발전사업의 기간)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발전사업의 최초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기간,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존속기간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서 정한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의 총합은 1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가 천재지변, 재난,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실적
2. 농업생산활동의 계속 가능성 및 발전설비의 안전성
3. 발전사업부지의 사용권원 및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
4. 주민환원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이행 실적 및 향후 이행 가능성
5. 농지의 보전상태, 원상회복 가능성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여부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계통연계 및 전기안전 관련 절차의 유지 여부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장신청의 방법, 연장 여부의 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의견수렴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주민이 발전사업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2. 발전사업부지의 위치·면적, 발전설비의 종류·용량·배치 및 사업기간
3.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 재배 예정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농기계 이용계획 및 농업용수·배수계획
4.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안전관리계획, 경관·환경 및 인접 농지 영농활동에 대한 영향 저감계획
5.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환원계획
6. 의견 제출기간·제출방법 및 열람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14일 이상 해야 한다.

1.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신청인이 공고 내용을 게재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게재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공고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 해당 발전사업부지가 속한 리·통의 게시판, 마을회관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게시
3. 해당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발전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2. 발전사업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해당 발전사업부지가 소재한 행정리·

행정동에 거주하는 20명 이상의 주민이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수렴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주민설명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제출된 주민 의견의 주요 내용,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포함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의 작성방법, 주민설명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차인인 경우에는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부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결정을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 제25조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감독대행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허가 기준)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 판단 참고기준, 자료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발전사업부지의 면적 및 발전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농업경영 규모, 영농경력, 노동력 및 농기계 보유·이용 여건
2. 작물별 재배 특성, 차광 영향, 수확량 저하 가능성 및 농업생산활동의 객관적 확인 가능성
3. 농업용수·배수, 농로, 농기계 통행, 인접 농지의 일조·통풍 및 농업생산기반에 미치는 영향
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가능성, 전기안전, 재해예방 및 원상회복 가능성
5. 발전사업부지 주변의 경관, 주거환경, 생태계, 역사·문화자원 및 주민 의견
6.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주민환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

건을 설정할 수 있다.

1.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설치 간격, 배치, 차광률, 통행로, 배수·관수시설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건
2.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 의결권 구조, 사업운영 방식 및 주민환원계획에 따른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확보에 관한 조건
3. 재배 작물, 재배방법, 영농기록, 수확·출하 증빙 및 현장확인에 관한 조건
4. 발전설비의 공사기간, 설치·유지관리, 정기점검, 사고보고 및 보험가입에 관한 조건
5. 주민 의견의 반영, 민원처리, 주민환원계획의 이행 및 공개에 관한 조건
6.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사용권원 소멸 또는 임대차 종료 시 발전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토양 복구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에 관한 조건
7.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보전, 농업생산활동의 지속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과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발전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별·작물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기술 수준,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소득의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규모를 제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제13조(협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를 받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발전사업부지의 위치·면적·경계, 지번별 토지이용 현황 및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현황, 거주요건 충족 여부, 출자·의결권 구조 및 운영계획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및 영농계획,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결과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
4. 농업생산기반·경관·생태계·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대책
5.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서
6.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의 필요성 및 공익성에 관한 설명서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서류 또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원센터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 지정 의제일, 대상 농지의 위치·면적·경계 및 주요 허가조건을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토지대장·농지대장 등 관련 공부 관리부서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리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에 관한 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때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관련 서류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농지전용·농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은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기간과 같다.

④ 법 제15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도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복구비용 예치, 토양보전, 배수관리, 농지전용 방지 및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정·예치·반환에 관하여는 「농지법」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가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해당 농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허가증의 발급 및 발전사업 허가대장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항을 말한다.

1. 발전사업자의 성명·명칭, 대표자 또는 연락처의 변경. 다만, 법 제12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전사업부지 면적 또는 발전용량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감소시키는 변경
3.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또는 경계의 정정으로서 발전사업부지의 실질적 위치, 영농계획 및 발전설비 배치에 변경이 없는 사항
4. 발전용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설비로 교체하는 변경. 다만, 영농활동·경관·안전 또는 인접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배 농작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농계획의 목적과 영농 여부 확인 가능성이 유지되는 변경
6. 영농책임자의 연락처 변경 또는 대체인력 지정의 변경으로서 영농계획의 주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사항
7. 착공·준공·수확 등 세부 일정의 변경으로서 총 사업기간 및 허가조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8. 법령명, 지번 표기, 도면 기호, 오기·누락 등 명백한 착오의 정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영농활동·경관·안전 또는 인접 농지의 영농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

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성명·명칭, 대표자 또는 연락처 변경 등 그 성질상 변경 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사항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 또는 정정은 변경신고가 수리된 후 할 수 있으며,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변경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의 신청, 변경신고의 수리, 주민 의견수렴의 실시 여부·범위,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변경허가”로, “허가신청”은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로, “허가신청서”는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본다.

제17조(사업자 지위승계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전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임차권·사용대차권 등 발전사업의 잔여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농업생산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것
3. 종전 발전사업자의 허가조건, 영농계획, 발전설비 유지관리계획 및 주민환원계획을 승계하여 이행할 수 있을 것
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대한 인가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당시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신청·신고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제18조(사업자 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승계 사실 및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양수일, 합병일 또는 분할로 인한 설립일부터 30일
 2.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17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과 종전 발전사업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 농지전용·농지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7조제4호 단서에 따라 승계신고가 수리된 승계인은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절차의 결과가 확정되거나 그 신청·신고를 취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확인 결과 같은 항에 따른 절차가 허가·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종료되어 승계인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위승계 신고의 방법, 심사,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은 법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질 것
2. 해당 작물의 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파종 · 정식 · 재배관리 · 수확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
3. 제22조에 따른 자료로 농업생산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은 발전사업부지에서의 영농계획 수립 · 이행과 영농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영농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제 경작 또는 재배 면적의 확인방법, 작물별 재배기간, 기준 수확량, 증명방법 및 영농실적 판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발전사업자가 정상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가뭄 · 대설 · 냉해 · 병해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또는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확산, 출입통제 또는 공익사업 시행 등 발전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질병 · 상해, 임신 · 출산, 병역의무 이행, 취학, 공직취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

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발전사업자가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로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영농책임자에게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대체 영농책임자를 지정할 수 없거나 필요한 영농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5. 발전설비의 안전점검·수리·교체, 농업기반시설의 보수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농지개량, 영농준비, 작부체계상 휴경, 토양개량, 객토, 배수개선, 농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또는 연작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시적 휴경이 불가피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농 지속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활동의 일시중단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 중단 기간, 영농 재개계획 및 증명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인정절차와 증명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의 인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공익사업, 질병 등 사유가 계속되어 농업생산활동 재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 등) ①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발전사업부지에서 재배해서는 안 된다.

1. 발전설비와 병행하여 재배하는 경우 농기계 운행, 농작업자 안전 또는 일반적인 재배관리가 확보될 수 없거나 농지 훼손 또는 인접 농지의 농업생산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농작물
2. 생육상태, 재배면적, 재배관리, 수확량 또는 생산물의 처분 여부 등 영농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농작물
3. 발전설비와 병행하여 재배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배방식에 따른 수확량에 비하여 그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농작물
4. 조경·관상·전시·차폐 또는 발전설비 은폐를 주된 목적으로 식재하거나 재배하는 농작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작물별 생육특성, 지역별 재배여건, 농작업 방식, 표준재배기술, 실증연구 결과 및 현장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재배가 제한되는 작물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 ① 발전사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1. 연도별 영농계획, 작부체계,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시기 및 경작·재배면적에 관한 자료
2. 농자재 투입, 농작업 수행, 농기계 사용 및 인력투입 등에 관한 자료
3. 제1호에 따른 파종·정식·재배관리·수확 시기 및 경작·재배면적과 제2호에 따른 농업생산활동의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발

전사업부지의 사진·영상자료. 이 경우 사진·영상자료에는 촬영 일시 및 촬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재배작물의 종류, 생산량, 판매 또는 자가소비 실적 등 농업생산 활동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발전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고장·사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자료가 작성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준수사항 이행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발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의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작성방법, 전자적 보관방법 및 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연계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익의 주민환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환원계획에 따라 그

수익의 일부를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기금의 조성·적립·집행
2. 주민의 전기요금, 에너지 효율개선, 마을 공동시설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에너지복지 지원
3. 농로, 배수로, 공동영농시설, 공동 농기계 이용, 공동작업장 등 농업생산기반 또는 공동영농활동 지원
4. 취약계층, 고령농업인, 청년농어업인, 임차농업인, 귀농인 등에 대한 복리·정착 지원
5. 돌봄·교통·보건·교육·문화·안전 등 생활서비스와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6. 해당 지역 농업인 또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영농·가공·유통·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7.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정관·규약 및 총회 의결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사업. 다만,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8. 그 밖에 주민총회, 조합 총회 또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1. 주민환원의 대상 지역 및 대상 주민
2. 전력 판매수입, 전력거래 정산금 등 발전사업 수입과 운영·유지관리비, 계통연계·전력거래 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직접 비용을 고려한 환원재원의 산정방식 및 환원 규모의 결정 기준
3. 주민환원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4. 주민 의견수렴 및 환원사업 결정 절차
5. 주민환원 실적의 공개방법
6. 회계관리 및 외부검증 계획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발전사업자는 주민환원계획, 주민환원 집행 결과 및 주민환원 재원의 산정 기초가 되는 발전사업 수익·회계 자료를 해당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환원계획 또는 주민환원 실적이 허가조건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환원계획의 수립·변경, 주민총회 또는 주민협의체 운영, 정보공개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준수사항 이행 확인)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의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제출자료의 검토
2. 농업경영정보, 전력거래자료, 전기사업 허가자료, 농지대장 등 관계자료의 확인
3. 현장확인, 사진촬영, 위치정보 확인 및 관계자 면담
4. 지원센터, 감독대행기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
5. 원격탐사, 항공사진, 전자영농일지,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발전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수사항 이행 확인의 세부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정명령)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할 사항, 시정기간, 불이행 시 조치 및 의견 제출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기간은 30일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영농시기, 작물의 생육기간, 시설 보수에 필요한 기간 및 공

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훼손, 전기안전 사고 또는 중대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발전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해야 한다.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취소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는 처분의 종류, 처분 사유, 처분일, 사업정지기간 또는 허가취소일, 발전사업부지 및 발전설비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의제된 주민참여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은 허가취소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지역이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철거·복구의 범위, 방법, 이행기간, 원상회복계획서의 제출기한 및 이행 확인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적 영농여건, 재해, 폐기물 처리, 토양복구 또는 행정절차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원상회복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거나 지원센터 또는 감독대행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사유, 예정 금액, 산정 근거 및 의견 제출기간을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르고,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다.

제30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17조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에 따른 신고가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조사 또는 처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에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신고 내용이 이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지된 경우
2. 신고인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3. 신고인이 위반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위반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절차, 공동신고자에 대한 배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
2.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에 관한 안내서의 작성·보급
3. 표준계약서 활용 및 임대차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제3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사업자의 유형, 발전사업부지의 위치·면적·지목 및 사용권 원 현황
2. 발전설비의 종류·용량·구조·차광률·설치연도·운영기간 및 발전량 현황
3. 재배 작물, 재배면적, 작부체계, 수확량 및 영농 지속성
4.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사고·재해, 민원 및 원상회복 현황
5.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컨설팅, 금융·보험 및 제도개선 수요
6. 허가취소·사업정지·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 사후관리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전사업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도개선, 사고·재해, 민원, 정책자금 관리 또는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표본조사, 면접조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또는 관계 기관 보유자료의 연계·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실태조사의 대행)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정·고시된 지원센터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업무수행 지역, 개인정보 보호, 결과 보고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둘 이상인 때에는 각 지원센터별 대행 범위와 업무수행 지역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통계 작성, 정책자금 지원, 컨설팅 및 교육·홍보 정보 제공
2.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전력거래·전기안전 관련 기관과의 자료 연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전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전력거래 관련 기관, 지원센터 및 발전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및 이용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5조(컨설팅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발전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계획, 작물 선정, 재배기술,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2. 발전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기안전, 보험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 발전사업 허가, 전기사업 허가, 계통연계, 전력거래 및 발전사업 수익구조에 관한 사항
4. 사업성 분석, 금융조달, 회계·세무, 법률, 임대차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 의견수렴, 주민참여협동조합 운영, 주민환원계획 및 갈등관리
6. 표준계약서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의 선정, 컨설팅 결과의 평가, 정책자금 등 다

른 지원수단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지원의 신청, 대상자 선정, 비용 지원 및 결과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농업인단체 및 발전사업자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작물별·지역별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개발
2. 발전설비 하부의 일조, 온도, 습도, 토양수분 및 생육환경 분석
3. 발전설비와 농기계 운행의 안전성 확보 기술
4. 농작물 생산성, 품질 및 농가소득 영향 분석
5. 발전효율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발전설비 배치기술
6. 발전사업부지의 원상회복, 토양관리 및 재해예방 기술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수용성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
품교육문화정보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및 지정일
2. 지원센터별 업무 범위 및 업무수행 지역
3. 둘 이상의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사업의 허가, 변경허가·변경신고, 허가기간 연장, 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상담·안내
2.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주민환원계획 및 원상회복계획의 수립 지원
3.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영농실적 판정 및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4. 표준계약서의 보급,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에 관한 상담 및 분쟁 예방 지원
5. 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자료 제출 및 정보공개에 관한 안내
6. 발전사업 관련 정책자금, 전력거래, 보험, 세무·회계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안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지원센터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지원센터는 발전사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8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사업성과, 예산 집행 및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조사자료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센터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조직·인력, 사업계획, 실적보고, 경비 지원, 운영 점검 및 시정·개선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보칙

제39조(감독의 방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조사·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목적, 범위, 기간, 담당자 및 제출자료를 미리 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안전사고, 재해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발전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3.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지역주민 조합원 10명 이상 유지 여부
4. 농업법인의 제7조 각 호의 요건 유지 여부
5. 발전사업부지의 영농활동 지속 여부
6.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유지 여부 및 전기안전 관련 검사·점검 이행 여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조사연도 12

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및 전자적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감독대행기관)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감독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물
품교육문화정보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독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의 자격요건, 거주요건, 농업경영정보 및 발전사업부지
사용권원에 관한 자료 검토
2. 영농계획 이행, 재배 작물, 재배면적, 영농기록 및 농산물 생산·판
매 증빙에 관한 현장확인
3. 발전설비의 구조·규격, 안전관리, 유지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관
한 현장확인
4. 주민환원계획 및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 검토
5. 시정명령 이행 여부, 원상회복 이행 여부 및 실태조사 자료의 사실
확인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감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확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대행의 목적, 범위, 기간, 확인 방법, 제출자료, 비용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④ 감독대행기관은 대행 업무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요청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⑤ 감독대행기관의 장과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임직원은 대행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또는 신고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감독대행기관의 장은 대행업무 대상 발전사업에 관하여 컨설팅, 기술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한 임직원을 해당 감독대행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과 보고의 방법·절차, 비용 지급 및 감독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검사(농지의 경영 면적 및 형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별표1]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조사·검사의 거부·방해·기피 또는 자료제출 명

령에 따른 거짓 자료 제출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과징금의 사전통지, 부과·징수,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관할 구역의 발전사업 현황,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사업자 지위승계 현황, 발전사업부지, 발전설비 운영, 영농계획의 이행 및 영농실적, 주민환원 및 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

3.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

4. 제3호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이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에 관한 조사계획의 검토,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요구 및 수행 실태의 점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

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대한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행기관 또는 위탁하려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자료 분석 및 통계 작성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3. 법 제23조에 따른 컨설팅, 교육·홍보 및 상담 지원
4. 법 제24조에 따른 연구·기술개발 및 성과 보급 지원
5.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고시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한다.

③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업무 처리 결과를 위탁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탁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

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원센터, 제4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감독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준수사항 확인, 시정명령,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 시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제20조 및 제26조에 따른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202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구조 기준
2. 제11조 및 별표 1,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

3.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 재배 제한 및 자료 작성
· 보관 · 제출 의무
4. 제23조에 따른 수익의 주민환원

제5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위반행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위반행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지원센터로 지정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

센터 지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시 제정, 서식 마련,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 업무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지원센터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까지는 서면, 전자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임시 전산망을 활용하여 이 영에 따른 신청, 신고, 자료제출 및 정보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사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존 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실증사업 또는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자가 법에 따른 발전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실증사업 또는 시범사업에서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허가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이 표의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 및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허가 여부의 판단,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조건의 설정에 적용한다.
-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전체 구역과 각 필지별 영농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이 표를 적용해야 한다.
-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주민 의견수렴 결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 현장확인 결과, 지역별·작물별 영농 여건, 발전설비의 구조·안전성 및 농지의 원상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표의 세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표의 세부기준 중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 또는 농업생산활동의 지속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마.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 여부,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주민환원계획의 구체성, 회계구분관리 및 정보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1. 신청인 및 사업수행능력	가. 법 제5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발전사업부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영농책임자 지정 등으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장비·영농기술 및 영농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자원조달, 보험가입 및 원상회복 비용 확보 계획이 객관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 라. 발전사업자의 명의대여, 허가요건 회피를 위한 사업분할, 위장 임대차, 거짓 영농계획 또는 형식적 주민참여 등 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해치지 않을 것
2. 발전사업부지 및 사용권원	가. 법 제6조에 따른 발전사업부지 요건에 적합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의제되는 「농지법」 제36조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나. 소유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권원을 발전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지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의 존속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농지의 집단화, 배수·관수 체계, 농로, 농업용수 이용, 인접 농지의 일조·통풍 및 주변 농지의 농업생산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라.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또는 사용권원 소멸 시 농지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원상회복계획, 복구비용 산정 및 비용 확보방안이 적정할 것 마. 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발전사업부지가

	영 제7조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3. 발전설비 및 안전관리계획	가. 발전설비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조로 설치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발전설비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안전, 구조안전, 화재예방, 풍수해 예방, 감전·누전 방지 및 계통연계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시공·운영·유지관리 과정에서 토양오염, 농지 훼손, 배수장애, 농업용수 오염, 폐기물 발생 또는 인접 농지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 라.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조치, 관계기관 보고, 설비 차단, 영농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계획이 적정할 것
4. 영농계획	가. 재배 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작부체계, 재배면적, 영농책임자, 참여인력, 노동력 확보방안, 농기계·장비·시설의 보유현황 및 이용계획, 주요 농자재·영농비용의 조달계획 및 생산물의 수확·판매·자가소비 등 처분계획이 구체적일 것 나. 발전설비의 차광, 통풍, 배수, 농기계 작업성 및 농작업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영 제21조에 따라 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영농활동 일지, 사진·영상자료, 농산물 출하·

	판매자료, 자가소비 확인자료, 농자재 구입자료 등으로 영농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생육관리, 수확 또는 생산물 처분 계획이 명확할 것
5. 농지보전 · 환경 · 원상회복	가. 발전설비의 기초공사, 배선공사, 관리통로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가 농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나. 토양유실, 토양다짐, 배수불량, 농업용수 오염, 폐기물 방치 및 농업생산기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구체적일 것 다. 주변 경관, 주거환경, 생태계, 문화재, 재해위험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라. 발전사업 종료, 허가취소 또는 농지 임대차 종료 시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토양 복구 및 농업생산기반 회복 절차가 명확할 것
6. 주민수용성 및 주민환원	가.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적정하게 거치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가 합리적으로 제시될 것 나. 발전설비의 설치 ·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안전사고, 경관 · 환경 영향 및 인접 농지 피해에 대한 예방 · 처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다.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법 제13

	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계획이 구체적이고, 환원 재원의 산정·집행·공개 및 회계관리 체계가 투 명할 것
7. 공익상 기준	가. 농업생산기반 보전,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 는 법의 목적에 부합할 것 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목적,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관계 법령상 토지이용 규제 와 정합성이 있을 것 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지역, 개발행위 제한, 환경 · 재해· 문화재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거나 필 요한 인허가·협의의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둘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 중 하나라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가중할 수 있으며, 가중한 사업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위반기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농업생산기반·인접 농지·주민에게 미친 영향, 시정명령 이행 노력 및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마. 라목에 따른 감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자진신고하거나 신속히 시정한 경우

2)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농지 훼손, 안전사고 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질병, 농업재해 등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가 있는 경우

4) 시정명령 기간 내 대부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작물 생육기간, 계절적
영농 여건 또는 설비 안전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이행이 지연된 경우
바. 라목에 따른 가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 2) 자료 은폐·조작 또는 거짓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
- 3) 농업생산기반 훼손, 안전사고, 인접 농지 피해 또는 중대한 주민 피해가 발생
한 경우
- 4) 별표 3 제1호나목2)에 따른 위반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5) 시정명령의 이행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경우

사. 사업정지는 정지대상 발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지
대상 발전설비를 운전하거나 그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등 정지
대상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행위는 사업정지기간 중 금지된다.

아. 사목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도 농업생산활동, 발전설
비의 안전관리, 사고예방,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해
야 한다.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정지기간, 정지대상 발
전사업부지 또는 발전설비, 사목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및 아목에 따라 계속해
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서에 적어야 한다.

차. 하나의 허가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부지가 포함되어 있고 위반행위가 일부 발
전사업부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보전 및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
여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지역 거주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나.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2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발전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4호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허가취소
마.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으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5호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허가취소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활동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배 제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6개월	사업정지 1년	허가취소
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자료 작	법 제15조제1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성·보관·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제6호	1개월	3개월	6개월
차.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주민환원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 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카. 허가된 발전사업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법 제15조제1 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타. 사업정지기간 중 발전설비를 운 전하거나 전력을 판매하는 등 정 지대상 발전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 제15조제1 항제7호	허가취소	허가취소	허가취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징금 산정 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위반면적, 위반면적의 비율 및 위반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위반면적”이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전사업부지 면적에서 실제 경작 또는 재배가 이루어지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
- 2) “위반면적의 비율”이란 위반면적을 발전사업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3) “위반기간”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날부터 그 위반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기간의 시작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현장확인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을 시작일로 한다.
- 4) 제20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면적과 기간은 각각 위반면적과 위반기간에서 제외한다. 같은 면적에서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면적과 기간을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 [(발전사업 수입 - 직접비용) × 위반면적의 비율]

- 1) “발전사업 수입”이란 위반기간에 귀속되는 전력 판매수입, 전력거래 정산금, 보조금·장려금·지원금 및 그 밖에 발전사업으로 얻은 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직접비용”이란 위반기간 중 발전사업 수행에 직접 든 발전설비 운영·유지 관리비, 계통연계·전력거래 비용, 보험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 수입에서 직접비용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라. 다목의 계산식에 필요한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 면적, 위반기간, 발전용량, 발전량, 전력판매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실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따른다.

마. 위반행위의 횟수 및 부과율의 적용 차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율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2) 1)에 따라 부과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1)에 따른 기간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과징금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 1)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한다.
- 2) 1)의 금액에 제2호의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산정금액을 산정한다.
- 3) 기본산정금액에서 제3호에 따른 감경액을 뺀 금액을 최종 부과금액으로 한다.

사. 나목4)에 따라 위반면적 또는 위반기간에서 제외한 사유를 감경사유로 다시 반영해서는 안 되며, 같은 사유를 둘 이상의 감경사유에 중복하여 반영해서도 안 된다.

아. 과징금 산정금액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버린다.

2. 부과율

위반행위의 횟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부과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5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3. 감경 기준

과징금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바목2)에 따른 기본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위반상태의 대부분을 시정한 경우

나. 천재지변, 재난, 농업재해, 질병 등 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반상태의 대부분을 시정하였으나 작물의 생육기간, 계절적 영농 여건 또는 발전설비의 안전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시정이 지연된 경우

라. 위반행위로 농지 훼손, 안전사고 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위반행위자가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포상금은 신고가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조사 또는 처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지급한다.

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 “같은 위반행위”란 같은 발전사업자, 같은 발전사업부지 및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처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마.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처분 등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처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포상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개별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기준
가.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에 기여한 경우	1천만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에 기여한 경우	300만원
다. 법 제1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기여한 경우	확정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라.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기여한 경우	100만원
마.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	확정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료 부과에 기여한 경우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독립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상태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최근 3년간 법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위반기간 및 위반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한의 범위에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진 경우
- 2) 거짓자료 제출, 자료 은폐·조작, 조사 방해 등으로 감독 목적의 달성이 현
저히 곤란해진 경우
- 3) 농업생산기반 훼손, 안전사고, 인접 농지 피해 또는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
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위반기간 및 위반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중한 후 감경한다.

아.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전통지, 의견제출, 자진납부
감경, 이의제기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발 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 는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1호	200	350	500
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전설 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지 않 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2호	100	250	400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법 제30조제1항	100	250	400

요청받은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3호			
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발전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3호	200	350	500
마.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 제4호	200	35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2853